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당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족관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족관 납품하는 업체임. 국내 유명 할인마트 또는 백화점에서는 당사가 수입하는 특수형광등과 피엘 등에 대해서 전기용품 안전 인증 확인서를 요구하나, 전기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

Answer

해수어·산호용 형광램프, 수초 성장용 형광램프, 파충류용 형광램프의 경우 수족관 동식물에 필요한 색의 빛을 방광하기 위한 형광 물질을 도포한 램프 및 파충류용 자외선을 방광하기 위한 형광 물질을 도포한 램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대상물품에 관한 고시”의2, “특수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에 해당되어 안전인증 면제대상이므로 면제확인기관에 안전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전기용품면제확인 기관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Tel. 02-890-8300 / Fax. 02-890-6999)

그러나, 동 램프를 점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기구가 수족관 등에서 분리되어 사용이 가능한 구조의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기구”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수조살균등의 경우, 파충류에 필요한 자외선을 방출하기 위한 램프는 백열전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자외선 램프가 부착된 기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소독기(살균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